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5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/ 보험정책급여팀장 고영옥 [6581]/ 팀원 박상아 [6575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1915호

시행일자 2026. 5. 1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

가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-135(2026. 5. 7.)

2. 위 호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고로 운영중인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」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-126호, 2026.5.7.)되어 안내하여온 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※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고)

○ 주요 개정 내용

1) 조문

· 제2조(전자문서), 제7조(질병군 전자문서) 삭제

- 고시 개정에 따른 삭제

· 제2조 및 제7조 삭제로 인한 전체 조문 정비

2) [별표 1]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(제2조 및 제7조제2항 관련), [별표 6]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(제7조제1항 관련) 삭제

- 고시 개정에 따른 삭제

3) [별표 1] 및 [별표 6] 삭제로 인한 전체 별표 정비

· [별표 2] → [별표 1]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(제2조 관련) 등

· 조문 변경으로 인한 관련근거 변경

○ 시행일

- 공고한 날부터 시행

3. 아울러, 동 개정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https://www.hira.or.kr , 기관소식 > HIRA소식 > 공지사항)에 게재되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.

(*의협 홈페이지(www.kma.org) '공지·뉴스-건강보험 고시 안내' 에도 안내되었음)

#붙임

1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.
2.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.
3. 주요 개정 내용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